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5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김영호 · 박수현
이성윤 · 김승원 · 서삼석
김한규 · 이정문 · 이해식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·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,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,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·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,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행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,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·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(징역·벌금) 수준을 상향함으로써,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

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36조 및 제37조 등).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”를 “선정하여야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전단 중 “3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65억원”을 “100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5년”을 “20년”으로, “30억원”을 “6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0년”을 “15년”으로, “10억원”을 “20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3년”을 “7년”으로, “3억원”을 “7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5천만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5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0조의3, 제10조의4, 제11조, 제12조를 준용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3년”을 “7년”으로, “3천만원”을 “7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2천만원”을 “3억원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) ① (생략)	제9조(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,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<u>선정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선정하여야</u>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6조(벌칙)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<u>3년</u>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<u>65억원</u>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.	제36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7년</u> ----- ----- <u>100억원</u> -----.
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	② ----- -----

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(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)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⑤ (생략)

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⑦ · ⑧ (생략)

<신설>

-----20년-----
-----60억원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15년-----
-----20억원-----
-----.

④ -----

-----7년-----
-----7억원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5억원-----
-----.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⑨ 제5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

	<u>10조의3, 제10조의4, 제11조, 제12조를 준용한다.</u>
제37조(예비·음모)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<u>3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37조(예비·음모) ① ----- ----- ----- <u>-7년-</u> ----- <u>-7억원-</u> -----.
②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<u>2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② ----- ----- <u>--5년-</u> ----- <u>-3억원-</u> -----.